

의안번호	2220576
의 퇴 인	윤준병 의원
회 답 일	2026. 10. 13.
추 계 번호	26B407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 시, 매입단가를 감정가격의 100분의 80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으로 현실화함(제5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2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청구 농지를 매입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출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매입재원을 다각화함(제6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농지 매입단가 현실화(안 제10조제5항)

- 개정안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매입가격을 감정가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과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농지 매입단가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매입가격 산정기준이 변경될 경우, 기존 기준에 따라 산정한 매입가격보다 매입단가가 상승하는 농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청구 농지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연도별 매수청구 및 실제 매입 실적, 농지별 매입가격, 현행 기준과 개정안의 산정 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가격 차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매입단가 상승분과 향후 매입 규모를 추정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농지 매입에 필요한 재원 다각화(안 제10조제6항)

- 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청구 농지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출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 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임
- 현행 제도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청구에 따라 농지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융자 외에 기금에서 직접 지출하는 방식도 허용함으로써 농지 매입자금의 조달 및 집행 방식을 확대하려는 것임
- 농지 매수청구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매입자금을 기존과 같이 융자 방식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기금 지출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반면, 농지관리기금에서 매입자금을 직접 지출하는 방식이 활용되는 경우에는 융자 방식과 비교하여 기금의 자금 집행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직접 지출 규모와 매수청구 농지의 매입 규모 등에 따라 기금의 지출액 및 운용 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개정안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는 농지 매수청구 건수 및 매입 면적, 농지별 매입가격, 농지 매입자금 중 직접 지출 방식으로 집행되는 비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위진수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위진수	02-6788-4650	wjinsu@assembly.go.kr